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센티널 (Project Sentinel)

프로젝트 센티널은 비영리 공정 주거 기관으로서 공정 주거에 관해 공동체 구성원, 주택 제공업체 및 세입자들에게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본 기관은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주거 차별을 체험해온 주민들을 지지한다.

프로젝트 센티널에 전화하면 직원들은 고객의 주거 문제점을 고객과 토의하고 공정 주거법에 따른 권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고객이 세입자일 경우 본 기관에서는:

- 고객의 불만사항을 조사
-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적 의무사항에 관한 교육 제공
-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상
- 주 혹은 연방 집행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고객을 지원
- 소송 과정에서 고객을 지지
- 더욱 상세한 법적 지원을 위해 무료 공정 주거 변호사에게 조회

고객이 주거 제공자일 경우 본 기관에서는:

- 공정 주거법에 따라 고객의 의무사항을 설명
- 고객 및/또는 고객의 직원을 위해 공정 주거 교육을 진행
- 고객의 공정 주거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추가 자료 제공

본 기관의 서비스는 **무료**이고 고객의 수입이나 이민 상태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센티널의 서비스 영역

프로젝트 센티널은 전화상으로 또는 본 기관의 수많은 지역 사무소들 중 한 곳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저희는 아래의 지역에서 주거 차별을 경험했거나 임대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
산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스테인트라우스 카운티(Stanislaus County)
새크라멘토 카운티(Sacramento County)
몬테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
프레몬트 시(City of Fremont)
머세드 시(City of Merced)

**프로젝트 센티널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료 전화: (888) 324-7468
텔레타이프: (800) 735-2929

info@housing.org

페이스북:

facebook.com/PSProjectSentinel

트위터:

@ProjSentinel

www.housing.org

프로젝트 센티널은 미 주택 도시 개발부 공정 주거 계획 프로그램(FH700G14018) 및 지방 공동체 개발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센티널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령 또는 가족 상태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주거 차별

장애인에 반한 행위



프로젝트 센티널

비영리 공정 주거 기관



자신의 권리를 숙지한다

연방 및 주 공정 주거법에 따라, 소유자, 재산 관리자 및 직원, 부동산 업체, HOA, 대피소, 은행 및 이동식 주택 공원 등 거주와 관련된 누구에게나 불법인 행위:

- 주택의 임대나 판매를 거절
- 더 높은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부과
- 특정 이웃의 주택이나 건물로 주민을 인도
- 세입자를 쫓아냄
- 상이한 법규나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민을 차별화
- 주택을 구하는 자, 그의 친구들 및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협박

...아래와 같이 보호받는 특징들 중 하나**때문에**:

장애	혈통
가족 상태*	성적 지향
종교	성 정체성 및 표현
성별	혼인 상태
인종	수입원
피부색	연령
국적	

...또는 양호한 세입자가 되거나 주택을 구매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의 능력과 무관한 **임의의 특징** 때문에.

고객의 주거 제공자가 차별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프로젝트 센티널 같은 공정 주거 기관에 상담하는 것 때문에 고객을 처벌하는 것도 불법이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족.**

자주 묻는 질문들

누가 장애인인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경우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주요 생활 활동에는 걷기, 사회 활동, 작업, 수면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장애 차별은 무엇인가?

주거 제공자가 (1) 장애 세입자를 비장애 세입자와 다르게 대우하거나, (2) 합리적인 협의나 개조 요청을 악의적으로 거절할 때 장애 차별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협의란 무엇인가?

주거 제공자는 종종 장애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규칙이나 정책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 주거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1) 세입자가 장애인이고, (2) 예외 사항이 장애인이 부동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3) 요청이 합리적일 경우 예외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 제공자는 반려견이 있는 장애 세입자에게 "애완견 금지" 정책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요청은 합리적인 협의이다.

합리적인 개조란 무엇인가?

또한 주거 제공자는 종종 장애 세입자가 주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필요할 때 부동산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도록 장애 세입자에게 허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합리적 개조의 예외 사례로는 램프나 가로대의 설치를 들 수 있다. 개조 비용은 부동산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을 때는 제외하고 세입자의 책임이다.

세입자는 합리적인 협의나 개조를 어떻게 취하는가?

세입자는 우선 주거 제공자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서면으로 이뤄지면 가장 좋다. 협의 요청에 대해 세입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다.

세입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또는 세입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과 장애의 연결성이 모호할 경우, 주거 제공자는 장애 및/또는 장애가 요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보조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소견서는 세입자의 장애를 익히 알고 있으며 세입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가가 쓸 수 있다. 소견서에는 (1) 세입자가 장애라고 확인하는 진술서 그리고 (2) 요청으로 세입자의 장애를 도와주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입자는 진단서나 질병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소유주나 관리자가 세입자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떤가?

주거 제공자는 요청을 무시하거나 너무 늦게 응답해서는 안된다. 주거 제공자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세입자와 협력하여 다른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

주거 제공자가 요청을 언제 거부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요청이 비합리적일 때이다. 요청으로 인해 주거 제공자에게 과도한 관리나 금융 부담을 안게 되거나 세입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크게 변경해야 할 경우 이 요청은 비합리적이다.